인권정책기본법안 (김영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34 발의연월일: 2025. 3. 28.

발 의 자:김영배・이학영・홍기원

문정복 • 박희승 • 윤건영

이기헌 · 윤종군 · 고민정

한정애・김종민 의원

(119]

제안이유

대한민국은 참여정부를 기점으로 5년 단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권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을 지향하고 있음.

그러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 없이 수립·시행되고 있어,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. 더불어 대한민국의 인권보호 체계가 국제인권조약과 유엔인권이사회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, 인권 신장을 위한 행정체계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음.

이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,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는 등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한 인권정책이 수립·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,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함(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).
- 나. 인권정책 추진실적 및 추진성과를 점검·평가하고 관련 백서를 발 간하도록 함(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).
- 다.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(안 제12조).
- 라.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구를 설치하도록 함(안 제13조).
- 마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·도 교육감은 인권정 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(안 제14조).
- 바.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제인권기 구 등의 권고를 이행하도록 함(안 제16조 및 제17조).
- 사. 기업의 인권존중책임과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명시함(안 제18조 및 제19조).
- 아. 국가기관 등의 인권교육 실시의무를 명시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20조 및 제21조).
- 자.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지정함(안 제24조).

인권정책기본법안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인권정책의 수립·추진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인권"이란 「대한민국헌법」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 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.
 - 2. "중앙행정기관"이란 「정부조직법」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 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.
 - 3. "지방자치단체"란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 체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교육청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의 보 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, 이에 필

요한 재원(財源)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.
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인권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장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

- 제5조(국가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정부는 5년마다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 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인권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
 - 2. 인권의 보호 · 증진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와 그 추진 방안
 - 3. 사회적 약자·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인권 보호·증진에 관한 사항
 - 4.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제17조에 따른 국제인 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에 관한 사항
 - 5. 제20조에 따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
 - 6. 그 밖에 인권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
 -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앞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고안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 -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송부된 권고안을 존중하여 기본계획

안을 작성하고, 공청회와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.

- 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심의 전에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.
- ⑥ 법무부장관은 인권 상황의 반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요청을 받아 기본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.
- ⑦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기본계획안의 확정 절차와 국가인권위원 회의 의견 표명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.
-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·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(이하 "공공기관의 장"이라 한다)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인권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연도별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연도별시행계획과 전년 도의 연도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도별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

- 의 장에게 연도별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지역계획의 수립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와 시·도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인권정책계획(이하 "지역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시·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연도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·평가) ①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년도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(기본계획이 종료되는 해는 제외한다) 점검·평가하여야 한다.
 -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점검·평가할 때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 -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를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,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 -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항에 따라 공개된 결과를 다음 연도의 연도별시행계획에 반영하

여야 한다.
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도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·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인권정책 추진성과의 평가)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해에 기본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권정책 추진성과(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포함한다)를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.
 -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-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, 관련 조사·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 -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,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한다.
 - ⑤ 시·도지사와 시·도 교육감은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해에 지역계획에 따른 인권정책 추진성과를 종합하여 평가하고,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 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정책 추진성과 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인권상황 백서)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국내 인권상황, 인권정

책 추진성과 및 평가 등이 포함된 백서(白書)를 발간하여 공개하여 야 한다.

제11조(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협조)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·연도별시행계획·지역계획의수립·시행, 추진실적 점검·평가와 추진성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3장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

- 제12조(국가인권정책위원회) ① 국가의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(이하 "국가인권정책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국가인권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조정한다.
 - 1. 인권정책의 추진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
 - 2. 기본계획의 수립 · 변경에 관한 사항
 - 3. 연도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·평가와 인권정책 추진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
 - 4. 인권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·조정이 필요 한 사항
 - 5.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의 이행과 제16조에 따른

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

- 6. 그 밖에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국가인권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
- 2. 인권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
- 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국가인권 정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- ⑦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·협의·조정하고 국가인권정책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인 권정책위원회에 국가인권정책실무위원회(이하 "실무위원회"라 한다) 를 두다.
-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인권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

- 제13조(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사무를 수행하는 인권기구(이하 "지방인권기구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- 1. 인권침해 사안의 자체적인 조사
 - 2.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시정권고 및 공표
 - 3. 지방인권정책의 수립
 - 4. 제20조에 따른 인권교육에 관한 사무
 - 5. 제21조에 따른 인권교육지원에 관한 사무
 - 6.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인권기구가 그 사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, 주 기적으로 인권보호에 관한 학계 전문가,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원, 민 간단체 또는 그 밖에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-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인권기구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방법·절차, 시정권고와 공표의 방식 등에 관한 지방인권기구의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인권기구의 사무 범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- 제14조(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담당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인권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)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4장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

- 제16조(국가보고서의 작성) ①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의 이행에 관하여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는 보고서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보고서(이하 "국가보고서"라 한다)를 작성할 때에는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1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보고서에 관하여 표명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보고서의 작성·제출을 주관하는 기관(이하 "주관기관"이라 한다)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소관 인권정책 분야를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 - ③ 주관기관의 장은 국가보고서에 관한 국제인권조약기구 등의 심

- 의를 거치는 경우 해당 심의 절차가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고서의 작성과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인권기구 등의 인권에 관한 권고를 이행하고, 이를 인권정책의 수립·시행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인권기구 등의 인권에 관한 권고 이행, 권고 내용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장 기업과 인권

- 제18조(기업의 인권존중책임) ① 기업은 국내·국외에서의 기업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기업은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피해자가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, 적절 한 구제 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19조(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등)
 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,
 - 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과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정부는 기업이 제18조에 따른 인권존중책임(이하 "인권존중책임"이라 한다)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침·표준을 마련하여 보급하고, 이를 활용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.
 - 1.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천을 위한 세부 지침
 - 2.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천 관련 정보의 자율적 공개를 위한 표준
 -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천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공개할 수 있다.
 -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지침·표준 마련, 제3항에 따른 우수 사례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6장 인권교육

제20조(인권교육의 실시) ① 다음 각 호의 기관, 단체 및 시설(이하 "인권교육의무기관"이라 한다)의 장은 소속 직원·학생 등을 대상으 로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인권침해나 부당한 처우를 예방 하기 위한 교육(이하 "인권교육"이라 한다)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

- 1. 국가기관
- 2. 지방자치단체
- 3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
- 4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
- 5.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
- 6.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에 따른 구금·보호시설
- 7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- 8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
- 9. 그 밖에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, 단체 및 시설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홍보하고, 인권교육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내용,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1조(인권교육을 위한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인권 교육과 이를 위한 시설·장비, 연구·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
 - 2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

- 3.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
- 4.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기관
- 5. 그 밖의 인권교육 관련 단체
-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의무기관의 장이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7장 보칙

- 제22조(국제협력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정책의 개발·추진을 위하여 외국정부·국제기구나 관계 외국단체·기관 등과 협력할 수있다.
- 제23조(비영리 법인·단체 등에 대한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 권의 보호·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·단체에 그 활동 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제24조(인권의 날) ①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고, 인권 보호·존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인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 제목 중 "정부보고서"를 "국가보고서"로 하고, 같은 조 중 "정부보고서"를 "국가보고서"로 한다.